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성주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3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○ 지원대상(안 제3조)

-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위생업소 및 동업자조합
-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위생업소 및 동업자조합
-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 위생업소 및 영업자단체
-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

○ 지원사업(안 제4조)

-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, 연구개발, 견학 및 교육사업
-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, 조리장, 화장실,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
-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
- 그 밖에 식품·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지원신청, 현지조사 및 선정, 지원제한, 위원회의 설치(안 제5조～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조, 제22조
- 식품위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
-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, 제16조

○ 예산조치 : 연 60백만원정도 지원

○ 입법예고 : 2018. 11. 08. ~ 11. 28.(20일간)

○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대상 아님

○ 성별영향평가 : 주민복지과 검토결과 개선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, 지원대상 및 사업, 지원신청 및 선정, 지원제한, 관련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관내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과 영세한 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